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812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11.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6.11.

홈페이지 준비중

[커버박스]

정 보 공 개 서

(주)커버박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커버박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31, 에이동 218호(상촌동, 금호베어스타운)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062-372-191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062-372-1917

가맹사업담당 부서 / 전화번호 :영업부 062-372-191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커버박스	커버박스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31, 에이동 218호(상촌동, 금호베어스타운)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12.29	2018.01.04	정동훈	062-372-1918	062-372-1917
	법인등록번호	200111-0516472	사업자등록번호		566-88-0093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정동훈	커버박스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31, 에이동 218호(상촌동, 금호베어스타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동훈	062-372-1918	062-372-1917
이사	양원희	커버박스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31, 에이동 218호(상촌동, 금호베어스타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동훈	062-372-1918	062-372-1917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커버박스]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커버박스	영업표지로 사용

상 호	커버박스 () 점	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
상표(서비스표)		출원일자 : 2018.04.26. 출원번호 : 4020180057034 등록일자 : 2018.12.20. 등록번호 : 4014291180000
그 밖의 영업표지		출원일자 : 2018.04.26 출원번호 : 4020180057036 등록일자 : 2018.12.20. 등록번호 : 4014291200000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계열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2,721,873	-552,038	3,273,912	4,402,196	-343,489	-263,493
2022	2,466,591	-707,188	3,173,780	4,477,885	-156,910	-155,150
2023	1,858,717	-829,368	2,688,086	3,572,387	-98,613	-122,18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므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전항의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정동훈	대표이사	2018.01. ~ 현재	대표	사업총괄
관련	양원희	이사	2018.01. ~ 현재	대표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12.31	상근	비상근	13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최근 3년간 [커버박스] 이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만료일)
커버박스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출원일자: 2018.04.26	출원번호: 4020180057036	(주)커버박스	2028.12.20
		등록일자: 2018.12.20	등록번호: 4014291200000		

- ▶ 당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이므로 당사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II. 가맹본부의 [커버박스]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8년 11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8.01.25)

2. [커버박스]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커버박스	커버박스	정동훈	2018.01.~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31, 에이동 218호(상촌동, 금호베어스타운)

3. [커버박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커버박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도소매	스마트폰 주변기기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16개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2	15	7	26	20	6	21	16	5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5	3	2	6	5	1	7	5	2
대전	5	5	0	4	4	0	2	2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4	1	3	4	1	3	2	1	1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2	2	0	2	2	0	0	0	0
전북	4	3	1	4	3	1	4	3	1
전남	2	1	1	6	5	1	6	5	1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커버박스]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3	2	0	0	0	15
2022	15	6	0	1	0	20
2023	20	1	0	5	0	16

6. [커버박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 당사는 직전 3년간 해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제외)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6	273,561	9,247	527,209	26,360	24,783	677	16개 산출
서울	0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5	238,162	8,348	369,116	11,848	169,267	5,124	5개산출
대전	2	해당없음						5개미만
울산	0							
세종	0							
경기	1	해당 없음						5개미만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3	해당 없음						5개미만
전남	5	218,616	6,723	363,644	11,121	135,361	4,008	5개산출
경북	0							
경남	0							
제주	0							

* 당사의 16개 가맹점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사업자별로 상품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주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커버박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일)
2023	16	1,16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 당사는 [2023년]에 [커버박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734			
광고	소계					2023년 손익계산서 참조
판촉	소계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예치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광주금호지점	광주 서구 풍금로 171 평화빌딩	062-653-0040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매장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 예치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④ 인터넷뱅킹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 당사는 현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조치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커버박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최초가맹금’ ‘기타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및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4,950	계약체결 후 당일	/	/
가맹비	2,200		오픈 전 해약 시 지출 경비와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교육비	2,750		교육 실시 1일 전 지출 경비와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실시 이후 반환 안 됨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5,000	계약 체결 당일	계약종료 후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정산 후 반환	계약이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가맹비	2,200 (VAT포함)
교육비	2,750 (VAT포함)
보증금	25,000 (부가세 해당 없음)
합계	29,95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25평=82.5㎡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단위: 천원)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인테리어 및 가구	협력업체	33,000	1,320	착수:50% 중도:30% 잔금:20%	시공 전 계약취소	시공 후	
장비/설비	협력업체	13,200	528	주문시: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외부간판 및 내부싸인	협력업체	2,750	/	제작전:100%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 후	
초도물품	당사	110,000	/	주문전: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총계		158,950	6,358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커버박스]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175,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간판 공사 중 인·허가 규정 사항 준수
-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시공사항**으로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덕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샷시, 자동문, 폴딩도어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 (단위 : 천원/부가세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계약금)	29,950	계약 체결 시
시설 공사대금	대금의 50%	공사 시작 시
	대금의 30% 및 대금의 20%	공사 중간 및 완료 일

금전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언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와 협의할 수는 있으나 가맹점의 입지선정의 책임은 가맹희망자에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 당사의 상품/서비스 내용 교육 이수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국외 여행에 결격 없는 자
종업원	만18세 이상자	- 신체 건강하고 외모단정한 자 - 당사의 상품/서비스 내용 교육 이수자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당사의 [커버박스]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다음 표에 있는 물품 등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의 풀폼 내역은 약 1420여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계약 체결 시 별도의 품목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매출액의 3%	익월 05일	/	상표사용 등의 대가로 소멸성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교육 전 개별 통지일	교육 미실시	교육실비 지출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의하여 결정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판촉활동 미실시	판촉활동 실시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분담		광고활동 미실시	광고활동 실시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미변경	변경
인테리어/ 시설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와 협의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교체·보수 한 후에는 반환 불가	
지연이자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위 표의 내용은 2023년도 16개의 가맹점을 1년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산출하였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용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사업장의 경영상태	고객 서비스 점검, 고객 관리 현황 점검, 설비 목록의 관리 상태 점검	분기1회 이상	슈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회계 외 2항목	회계처리 점검, 각종설비관리점검, 서비스 품질점검	분기1회 이상	슈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제10조의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해당 없음	-	-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6조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① 잔여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0	-
교육비	2,75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5,000	부가세 없음

② 신규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2,2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75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5,000	부가세 없음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 가. 귀하는 당사로 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간판 등 제반 영업표지를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 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커버박스]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지정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시장가격, 원부자재 가격의 양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의 품목 및 공급가격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 당사는 [커버박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요구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 ▶당사가 [커버박스]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폰품 스냅링(동글이/네모)	별도의 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 시 제공할 예정이고, 지정 상품은 필수 판매 상품이며 이외의 상품은 권장사항 입니다.	위반 시 시정요구 및 물품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사 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려거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하이브리드 그랩			
카카오 3D오링			
링오(전체디자인)			
통과제리 큐티링			
마블 써클링			
외 1400여 품목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용역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회사의 관련자	당사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폰품 스냅링(동글이/네모)	10,000	변경 시 월별 서면 통지	2022년 12월 기준
하이브리드 그랩	29,000		
카카오 3D오링	22,000		
링오(전체디자인)	20,000		
통과제리 큐티링	20,000		
마블 씨클링	15,000		
외 1400 여 품목	/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업종	가맹본부	계열회사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반경 1,000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커버박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커버박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2%	18%	0%	0%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커버박스]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다만,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되며 갱신비는 없음)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3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조 2호·3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6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6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22조 2항	34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1조 1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	42조	

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 을 저해하는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7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5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 는 경우	14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0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하는 경우	23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3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 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 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4조 1항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 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4조 3항 각호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4조 4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을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 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교육비 등은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은 필요시 이수하여야 한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업종	만약 귀하가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커버박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09:00 ~ 22:00 권장 지역 상권에 따라 협의	추석, 설 명절과 보수교육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무휴(7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불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당 1회 이상 가맹점을 점검하고, 당사가 정한 규정 이

외의 장비/교재 등의 취급여부 및 보관상태,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회계처리	1. 본사 담당자 매장 방문 → 상태확인 → 시정 및 지도 → 완료 2. 월 1회 본사지정 업무보고서 제출	1회/분기 또는 필요시	본사 운영팀
운영 매뉴얼 준수			
회원관리 현황			
기타 지침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 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 여 결정→행사 시 행→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 업자의 70%이상 의 동의 시 전 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의 50%	증정상품 출하가의 50%	상동	상동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상동	상동	

※ 당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시행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한 행사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

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지,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커버박스』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유통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④ 그 밖에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8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1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제공 14일 후 계약 가능)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계약금) 예치	1일	29,950
인테리어 및 설비 입고	- 설비 입고(필요시)	25일	158,950
교육	- 약 1일소요	2일	
오픈	- 영업 시작	D-day	
총계			188,900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실비 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커버박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가맹점 운영 및 상품 교육	8H X 6일 = 48H	가맹점사업자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개점 직후 교육	가맹점 운영 및 상품 교육	6H X 3일 = 18H			개점 직후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커버박스” 가맹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신상품 가맹점통지사항/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및 가맹점 관리 운영	개별교육	개별협의	선택교육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비고
----	------	--------------------	----

개점 전 교육	48시간	2,750	
개점 직수 교육	18시간		
수시 교육	3시간	기본교육 무료 /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
특별 교육	협의	개별 사안에 따라 협의	선택교육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도	부천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81, 102호(상동,센터프라자)
2	광주	금호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87, 1층(금호동)
3	전남	화순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93-11
4	전북	전북도청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20(금양빌딩) 101,102
5	광주	동명점	광주광역시 제봉로110번길 19, 101호(장동, 도란빌딩)

상기 직영점(5곳)은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일)	비고
1.476	직영점 6곳

3.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33,985	POS 데이터 기준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62-372-191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가맹사업자의 부담
-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가맹 본부: (주)커버박스 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 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가맹점 현장 점검표

가맹점 현장 점검표

* 가맹점명 :

* 점검일 : 년 월 일

* 점검인 :

구분	관리항목	관리상태					비고
		매우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우수	
1	복장(청결, 착용)						
2	장비관리상태(청결)						
3	장비보유(장비구축)						
4	가맹점유지상태(청결)						
5	청소상태(품질관리)						
6	검수시 고객응대태도						
7	서비스 시간(시행력)						
8	레포트 작성(절차준수)						
9	고객지시사항 이행(서비스)						
10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11	A/S 처리(사후관리)						
12	레포트 관리(품질관리)						
13	재고관리(입/출고관리)						
14	청소 방법(품질관리)						
15	A/S 발생횟수(품질관리)	5회	4회	3회	2회	1회	
점수							

* 매우불량 : 2점 , 불량 : 4점, 보통 : 6점, 우수 : 8점, 매우우수 : 10점

* 점수 총합을 150점으로 하며 평균점인 75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가맹점의 경우 주문 또는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 소정의 패널티와 함께 본사 집체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한다.

* 점검표는 본사와 가맹점 상호가 각각 확인 후 소지하도록 한다.

확인자 서명 :

(인)